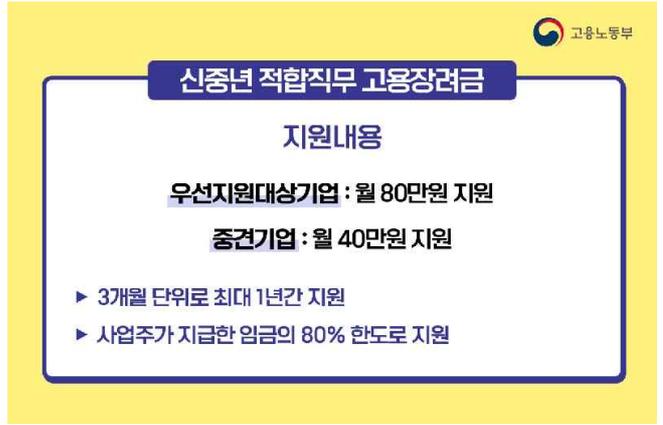

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

- ▶ **(지원대상)**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중견기업
- ▶ **(지원요건)** 정규직 채용(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)*, 3개월 이상 고용 유지(채용 전 사업계획서 신청)
*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
- ▶ **(지원내용)**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(최대 1년간)
- ▶ **(신청)** www.ei.go.kr/



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

지원내용

우선지원대상기업 : 월 80만원 지원

중견기업 : 월 40만원 지원

- ▶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
- ▶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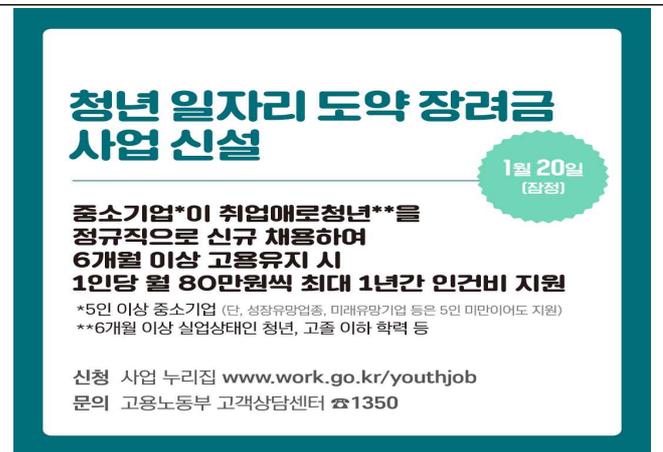
청년내일채움공제

- ▶ **(지원대상)** 신규 취업 청년* 및 5인 이상 중소기업(정규직 채용)
- *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
- ▶ **(지원내용)** 청년·기업·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, 만기시 청년이 1,200만원 만기공제금 수령
- ▶ **(신청)** www.work.go.kr/youngtomorrow


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

- ▶ **(지원대상)** 5인 이상 중소기업
- ▶ **(지원요건)**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, 고용보험 가입,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
- ▶ **(지원내용)**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 지급(1년간)
- ▶ **(신청)** www.work.go.kr/youthjob


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

1월 20일 (참정)

중소기업*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**

*5인 이상 중소기업 (단, 성장유망업종,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)
**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, 고졸 이하 학력 등

신청 사업 누리집 www.work.go.kr/youthjob
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

※ (중소기업) 자산총액 5,000억원 미만, 평균매출액 등 1,000억원 이하 등 건설업체
 ※ 지원대상, 신청방법 및 그 외 지원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 문의